

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 : 2000년 12월 8일(조례 제489호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13년말 조성액	'14년도 운용현황			'14년말 조성액	'15년 운용계획			비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872	201	70	131	1,003	97	262	△165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○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('14년도)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세부사업	지출내역	금액
총 계			70,434
소 계			23,106
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	○ 모범음식점 지원	○ 표지판 구매	2,843
		○ 물품지원 : 포장용기, 테이블세팅지 등	12,544
	○ 음식문화개선 홍보	○ 홍보판넬, 테이블플렛 등 제작	1,667
	○ 음식물 수거	○ 삼대냉면 외 8개소 수거비용	157
	○ 나트륨 저감화	○ 블루투스 염도계 구매	1,980
	○ 부정불량식품 단속	○ 신고포상금 지급	450
		○ APT 시약 등 구매	3,465
소 계			39,160
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	○ 식품위생 감시활동	○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	30,320
		○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	7,960
		○ 대학생 먹거리보안관 교육경비	880
보조금 사용잔액 반납			8,168

※ 보전지출(예치금) 1,003,006천원 별도

○ 잘된 점

-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
-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 활용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부정·불량식품 감소,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
- 기금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기금 증대

○ 미흡한 점

- '13년도 말 기준, 기금을 대출한 6개 업소 중 4개 업소가 상환을 완료하고 2개 업소가 상환 중('14년도 말 기준 대출 잔액 41,600천원)에 있으며, 시중보다 낮은 대출 금리로 인해 기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나,
- '13년도 이후 기금대출 실적이 없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조리장 공개 등 식품위생 시설개선을 위한 기금활용이 필요함

○ 향후 조치계획

- 용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
 - 관련단체별 중앙회, 우리구 구보, 유선방송, 지역방송, 반사회보를 통한 홍보
 - 기존 및 신규영업자 민원업무 내방 시 적극 홍보하여 기금용자 활동 전개
-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업비 집행시 업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 및 공감대 형성

○ 기금의 존치필요성

-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존치가 필요함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'13년도			'14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348	71	20	267	62	23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구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3년	① 영업장 및 화장실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용자 : 250백만원	-	0
	②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: 42백만원	25백만원	60
	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: 56백만원	46백만원	82
'14년	① 영업장 및 화장실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용자 : 170백만원	-	0
	②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: 41백만원	23백만원	56
	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: 56백만원	39백만원	70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용자는 과년도와 비교하여 용자대상업소 및 용자금액 실적 없음.
- 모범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지원사업으로 블루투스염도계, 테이블세팅지 등 제작·구매 지원하고,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및 APT시약 구매활용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기금을 활용함
-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은 식품접객업소 점검, 집단급식소 점검, 원산지 지도점검,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등 계도 및 시정조치 실시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	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	-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-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- 식품위생관련 교육·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 지원	- 용자실적 없음 - 56% - 70%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시키고,
-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식품 발생 예방, 식중독 예방, 청소년 탈선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음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

구 분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12년	정기예금 예치기간 미준수(16일~39일 지연)
	'13년	-
	'14년	-
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(권고조치)	-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

-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서울시 지침에 의거, 사업수행을 함으로 자치구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

○ 기금 존치의 필요성

-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
-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식품 발생 예방, 식중독 예방, 청소년 탈선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음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 : **해당없음**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**해당없음**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○ 재원의 성격

-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,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-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: 용자 회수금 및 이자
- 여유자금 운용(은행 예치금)으로 생기는 이자수입

○ 규 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2013년도말 현 재 액	2014년도 증감액			2014년도말 현 재 액
	수입액	지출액	증감	
872	201	70	증131	1,003

○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

(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에 대한 평가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2년		'13년		'14년	
수 입	합 계	1,082	%	943	%	1,073	%
	전 입 금						
	보 조 금	63	5.8	10	1.0	9	0.8
	차 입 금						
	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69	6.4	148	15.7	126	11.8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879	81.2	732	77.6	872	81.3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43	4.0	25	2.7	22	2.0
	기타수입	28	2.6	28	3	44	4.1
지 출	합 계	1,082	%	943	%	1,073	%
	비용자성사업비	110	10.2	71	7.5	62	5.8
	융자성사업비	240	22.2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732	67.6	872	92.5	1,003	93.5
	차입금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원리금상환						
기타지출					8	0.7	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융자 활동 전개
- 실질적 실천위주의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기금 사용 방안 강구
- 시보조금 지원확대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를 통한 식품위생의 질 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